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8

서 울 고 등 법 원

춘천제2행정부

판 결

사 건	(춘천)2019누17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A 주식회사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장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[redacted]
	담당변호사[redacted]
제 1 심 판 결	춘천지방법원 2019. 9. 24. 선고 2018구합51322 판결
변 론 종 결	2020. 4. 27.
판 결 선 고	2020. 5. 18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7. 4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,341,300원 및 농어촌특별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8

954,3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,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,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사비 중에서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기초로 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확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3쪽 7줄의 "11,295,640"을 "11,295,640원"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3쪽 글상자 안 8줄의 "195,454,54,원"을 "195,454,545원"으로 고쳐 쓴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복형

판사 이재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8

판사 이건희